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5호 2025. 12. 24.(수)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경북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S-4BL](예천군 고시 제2025-162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63호)
-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고(예천군 고시 제2025-164호)

공 고

-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721호)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74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예 천 군



- 사업명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S-4BL 주택건설사업계획
-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지평디앤피(신일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108 3층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단계 S-4BL
-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아파트 (민간분양)	○ 대지면적 : 56,401.00㎡ ○ 연 면 적 : 186,743.7875㎡ ○ 건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32층, 1,150세대 84A~D형, (주10개동, 부15개동)	413,885,445천원	

-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30. 01.
-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관계서류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9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인)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 사유
		유형	등급	현황	
내지N2지구	용문면 내지리 산 87-2	붕괴 위험 지역	D	H= 15m L= 200m S= 65°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튼들, 낙석, 좁은 절리 간격 등이 발견되어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함
우래지구	보문면 우래리 302	붕괴 위험 지역	D	H= 29m L= 278m S= 58°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표층유실, 수평절리 발달 및 낙석이 관찰되어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5. 12. 29.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대상지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추정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내지N2지구	2026년 이후	753	· 계단식 옹벽 : 1,320㎡ · 앵커 : 147공 ·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설치 : 260m · 낙석방지울타리 : 55m
우래지구	2026년 이후	97	· 낙석방지망 : 320㎡ · 산마루측구 : 260m · 배수로설치 : 60m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해서는 사전에 예천군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문의처 : 경상북도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054-650-8838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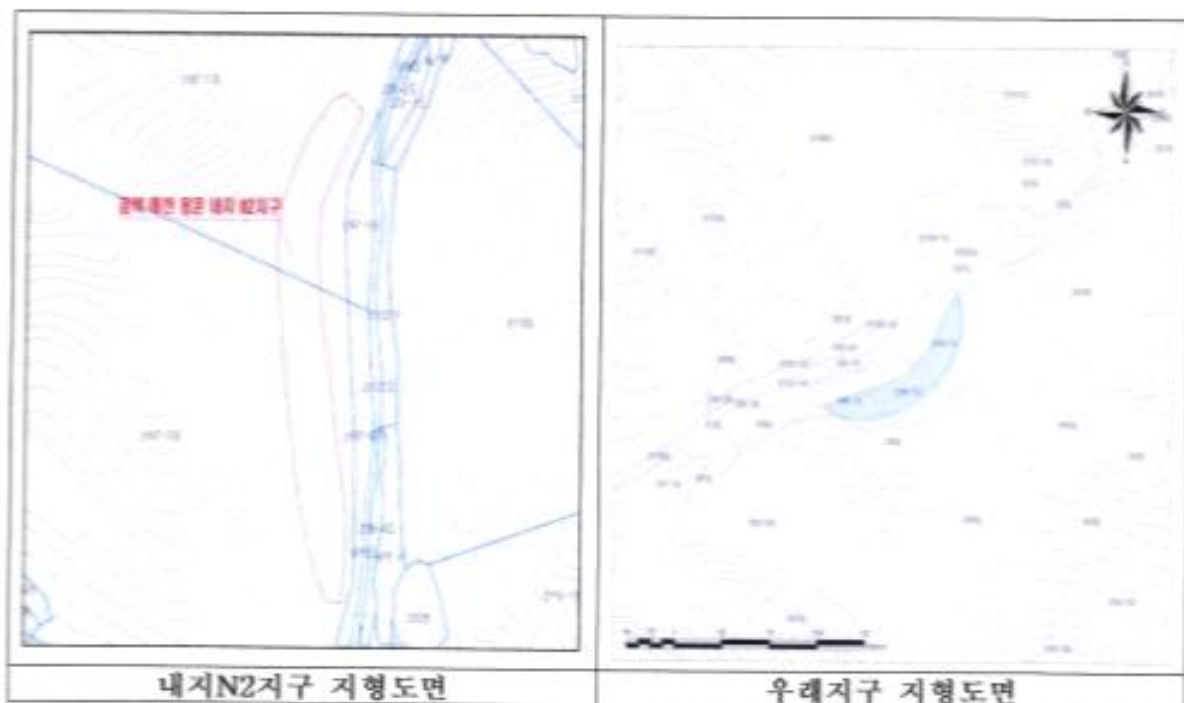
2. 지형도면 1부. 끝.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내지N2지구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 87-2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우래지구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302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지형도면



예천군 고시 제2025-164호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4-158호(2024. 12. 2.)로 고시된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변경)

계 획 명	예천군 노하·동본·남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 업 명	단술(醢)샘(泉)에 깃드는 새바람, 그리고 확실한 행복								
사업위치	예천군 예천읍 노하·동본·남본리 일원				사업면적	230,428㎡ (163,220㎡)			
사업기간	당초 : 2021년 ~ 2025년 변경 : 2021년 ~ 2026년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당초	323.23	72.00	48.00	58.19	29.41	93.87	11.76	10.0
	변경	323.73	72.00	48.00	58.19	29.41	94.37	11.76	10.0
주요 단위사업	1.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2.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3.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②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비전	단술(醢) 샘(泉)에 깃드는 새바람, 그리고 확실한 행복
목표	1.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2. 기초생활 SOC확충을 통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3. 범죄예방설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③ 사업변경 내용

- 총 사업기간 1년 연장 (최종 고시 2021~2025년) → (변경 2021~2026년)
 - 3개 단위사업 내 6개 세부사업 중 2개 세부사업 사업기간 연장
(A2. 전통시장 환경개선, C1.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 3개 단위사업 내 6개 세부사업 중 4개 세부사업 규모 및 사업비 조정

[변경전]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A.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A1. 매콤쌈싸름 남포시장 만들기

① 남포시장진입로 개설(H/W)

② 방문객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H/W)

A2. 전통시장 환경개선

① 시장2길 “차없는거리” 조성(H/S/W)

② 맛고을거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H/W)

③ 지역상권 공생 프로그램(S/W)

A3. 한우왕조 2000조성

① 한우왕조2000조성(H/S/W)

[변경후]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A.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소득지원

A1. 매콤쌈싸름 남포시장 만들기

① 남포시장진입로 개설(H/W)

② 방문객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H/W)

A2. 전통시장 환경개선

① 시장2길 “차없는거리” 조성(H/S/W)

② 맛고을거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H/W)

③ 지역상권 공생 프로그램(S/W)

A3. 한우왕조 2000조성

① 한우왕조2000조성(H/S/W)

B.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B1.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①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조성(H/W)

② 작은도서관, 학습지도관(S/W)

③ 마을문화센터(S/W)

④ 장난감도서관(S/W)-자체지방비

⑤ 다함께돌봄센터(S/W)-자체지방비

B2. 단샘어울림 센터 조성

① 단샘어울림센터 조성(리모델링)(H/W)

② 단샘카페 및 역사문화전시장(S/W)

③ 시니어아카데미 및 다목적강당(조성)(H/S/W)

B.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육성

B1.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①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조성(H/W)

② 작은도서관, 학습지도관(S/W)

③ 마을문화센터(S/W)

④ 장난감도서관(S/W)-자체지방비

⑤ 다함께돌봄센터(S/W)-자체지방비

B2. 단샘어울림 센터 조성

① 단샘어울림센터 조성(리모델링)(H/W)

② 단샘카페 및 역사문화전시장(S/W)

③ 시니어아카데미 및 다목적강당(조성)(H/S/W)

C.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C1.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①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H/W)

② 한천로변 노후불량주택 철거방지공원 및 협터설치(H/W)

③ 공공시설물 개선(M/S, 기후대응형버스쉼터)(H/W)

④ 주민주도사업 및 역량강화(S/W)

C.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

C1. 더 좋은 단샘마을 만들기

① 범죄환경안심거리 조성(H/W)

② 한천로변 노후불량주택 철거방지공원 및 협터설치(H/W)

③ 공공시설물 개선(M/S, 기후대응형버스쉼터)(H/W)

④ 주민주도사업 및 역량강화(S/W)

4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변경)

구분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합계	재정보조사업					기금	부채합입		자세 지원비		공기업
				소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지방비				
총계			32,373	12,000	7,200	1,200	3,600	1,000	5,819	2,941	9,437	1,176		
매출 연계 사업	합계		18,341	12,000	7,200	1,200	3,600	1,000	-	-	5,341	-		
	소계		304	304	237	39	118	-	-	-	-	-		
	전입로 개선	HW	20	20	12	2	6	-	-	-	-	-	21	
		방문객 편의 및 자회사 입원시장연계	HW	374	374	225	37	112	-	-	-	-	24-25	
		소계		531	531	318	53	160	-	-	-	-	-	
	시장입장 자영업자 조성 (이동식매대 제작 설치)	H-SW	82	82	49	8	25	-	-	-	-	-	25-26	
		맞고물거리 여간점안착화거의 조성	HW	249	249	149	25	75	-	-	-	-	24	
		지역상권 공생프로그램	SW	200	200	120	20	60	-	-	-	-	23-26	
	소계		9,200	5,347	3,208	536	1,604	1,000	-	-	2,853	-		
	한우윙조2000조성		H-SW	9,200	5,347	3,208	536	1,604	1,000	-	-	2,853	-	21-25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	소계		6,233	3,796	2,277	379	1,139	-	-	-	2,438	-	
		만성케어센터조성	HW	5,506	3,756	2,253	375	1,127	-	-	-	1,750	-	21-24
		청년창업지원	SW	440	-	-	-	-	-	-	-	440	-	23-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SW	248	-	-	-	-	-	-	-	248	-	23-23
		청년도서관 학습지도	SW	20	20	12	2	6	-	-	-	-	-	23-24
		다문화가족지원	SW	20	20	12	2	6	-	-	-	-	-	23-24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소계		1,075	1,026	619	103	307	-	-	-	50	-	
		여유원센터조성	HW	961	961	577	96	288	-	-	-	-	-	21
		다문화가족지원 및 학부모지원사업 운영	SW	94	44	26	5	13	-	-	-	50	-	23-25
		사.코아카데미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H-SW	20	20	12	2	6	-	-	-	-	-	23-24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연계	소계		908	908	545	91	272	-	-	-	-	-	
		방화환점안착거의 조성	HW	113	113	68	11	34	-	-	-	-	-	22
		한천로변 노후물량주매 설거	HW	200	200	120	20	60	-	-	-	-	-	23
		방화환점, 방화조성	HW	195	195	117	20	58	-	-	-	-	-	24-26
		후천주도사업 및 역점강화	SW	400	400	240	40	120	-	-	-	-	-	22-26
지자체 사업	합계		2,919	-	-	-	-	-	-	-	2,919	-		
	청년취업 설치운영		500	-	-	-	-	-	-	-	500	-	20-2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00	-	-	-	-	-	-	-	400	-	21-24	
	매점입자용 농민시장연계 부지매입비		264	-	-	-	-	-	-	-	264	-	20	
	한우윙조2000 조성 부지매입비		1,199	-	-	-	-	-	-	-	1,199	-	20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556	-	-	-	-	-	-	-	556	-	20	
부채연계 사업	합계		8,760	-	-	-	-	-	5,819	2,941	-	-		
	예산군 신원마을버스사업		7,000	-	-	-	-	-	4,900	2,100	-	-	19-22	
	예산읍농산물유통주지환경개선		300	-	-	-	-	-	234	156	-	-	20	
	주지환경개선사업		1,370	-	-	-	-	-	685	685	-	-	19-20	
공기업 연계사업	합계		2,363	-	-	-	-	-	-	-	1,177	1,176		
	예산읍 자문회사사업		2,363	-	-	-	-	-	-	-	1,177	1,176	20-21	

5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변경없음)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⑥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4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54-650-6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예천군 고시 제2025-76호(2025.6.19.)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예천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예 천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855-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예천경찰서 이전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내용

- 면 적 : 12,325㎡
- 내 용 : 토공·배수공·구조물공, 포장공 등 1식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천군수(재무과)
-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1	예천	청북	847	전	3,623	3,623		예천군			
2	예천	청북	847-1	도	799	105		예천군			
3	예천	청북	847-2	전	595	595		예천군			
4	예천	청북	849-2	전	1,806	1,557		예천군			
5	예천	청북	855-1	전	1,052	1,052		예천군			
6	예천	청북	855-11	임	5,393	5,393		예천군			

사. 열람기간 : 2025. 12. 29. ~ 2026. 1. 12. (14일간)

아. 열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예천읍 충효로 111, 4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재무과(☎054-650-61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예 천 군수 

1. 조례명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에 의거하여 예천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나.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통합지원회의 실시 규정(안 제4조~제10조)

- 대상자 발굴·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실시

다.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규정(안 제11조~13조)

-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월)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주민행복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 전화 : 054-650-6167
- 팩스 : 054-650-6360
- 전자우편 : sujin57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행복과(전화: 054-650-6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예천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

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예천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 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예천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3. 예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담당 조직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예천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1 관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3.2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